

<p>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특별히 考慮할 것도 없습니다.</p> <p>○金濼會委員 考慮 않지요, 考慮 안한다는 말이예요.</p> <p>○財務局長 朴亨錫 같은 地區內에서는 問題가 없습니다.</p> <p>○朴別根委員 다른 데 갔다가…….</p> <p>○金濼會委員 다른 데는 거기서 거기에 대한 法 適用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그렇지요. 그것은 도리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1家口 2住宅이 되니까 그것은 適用을 못 받는다고, 같은 사람이면…….</p> <p>○朴別根委員 아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요…….</p> <p>(「우리 原案대로 通過시키고……」하는 委員 있음)</p> <p>○委員長 李聲九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5項에 대한 質疑 答辯 모두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p> <p>2.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고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현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參 照)</p> <p>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과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으로 議事日程 第6項으로 되어 있는 城北區 吉音洞 541番地 84號所在 市有雜種財産 賣却과 關聯한 請願의 件은 請願이 處理되었을 時 結果的으로 民願解決이 可能한지 與否를 한 번 더 調査해 보기 위하여 오늘 上程을 保留하고자 하니 委員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局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이상으로 第69回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p>散會를 宣布합니다.</p>